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764호 2013년 4월 15일(월)

공 고

- 건축허가(신고)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..... 2
-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.... 3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건축허가(신고)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
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(신고)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·공고 합니다

2013년 4월 10일

속 초 시 장

1. 사 업 명 : 건축허가(신고)에 따른 도로지정
2. 도로위치 : 도로지정조서 참조
3. 도로길이 : 도로지정조서 참조
4. 도로너비 : 도로지정조서 참조
5. 도로지정 면적 : 도로지정조서 참조
6. 도로지정 조서

소재지	지 번	도로 길이 (m)	도로 너비 (m)	면 적(m ²)		소유자	허가(신고)번호 및 허가(신고)일	비 고
				공부 면적	지정 면적			
속초시 노학동	산558	30	7.0	200	200	김광석 김성기	2013-건축신고-제11호 (2013.04.10.)	

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속초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4월 15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건축 조례

2.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: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, 현행 건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적법하고 실효성 있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용적률 적용 완화(안 제3조제4항)

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다목 규정에 의거 용적률에서 제외되었으나 본 내용이 삭제되어 조례로 정함.

나. 맞벽건축 대상 지역 확대에 따른 제목 변경 및 조항 삭제(안 제28조)

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건축법시행령에서 상업지역과 조례로 정한 준주거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제목 변경 및 조항 삭제

다.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(안 제30조제1항)

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 9미터이하인 부분은 1.5미터 이상,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함.

4. 자치법규안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**2013년 5월 5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 : 건축지도담당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 주소 ·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제출할 곳 : 우217-030/ 속초시 중앙로 183(중앙동469-6)

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건축지도담당

(전화: 033-639-2457, FAX: 033-639-2314, E-mail : rhqhdwls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축지도담당 담당자 고봉진(전화:033-639-2457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(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에 저축된 부분을 제외한다)”를 삭제한다.

제19조(제2항제2호) 중 “등록되거나 속초지역에 소재한 건축사가 대행한다”를 “등록된 건축사가 대행하며, 등록순번에 따라 지정된 건축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 시 지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제28조의 제목 “(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)”을 “(맞벽건축 및 연결복도)”로 하고, 같은조 제1항을 삭제한다.

제29조제2항 중 “공원(근린공원, 어린이 공원을 제외한다)”을 “공원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1항(제1호)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중 “8미터”를 “9미터”로, “2미터”를 “1.5미터”로 하며, 같은항 제3호 중 “8미터”를 “9미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적용의 완화) ①~③ (생략) ④ (신설)</p>	<p>제3조(적용의 완화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.</u></p>
<p>제4조(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) (생략) 1.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옥외계단·옥탑·계단탑 등의 증축 또는 개축(<u>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에 저축된 부분을 제외한다</u>) 2.~4.(생략)</p>	<p>제4조(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) (현행과 같음) 1.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옥외계단·옥탑·계단탑 등의 증축 또는 개축 2.~4.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9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등) ①(생략) ②(생략) 1.(생략) 2. 제1항제4호의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중 「건축사법」에 의하여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속초지역건축사회(이하 “건축사회”라 한다)에 <u>등록되거나 속초지역에 소재한 건축사가 대행한다.</u></p>	<p>제19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1.(현행과 같음) 2. 제1항제4호의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중 「건축사법」에 의하여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속초지역건축사회(이하 “건축사회”라 한다)에 <u>등록된 건축사가 대행하며, 등록순번에 따라 지정된 건축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 승인신청시 지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</u> (삭제)</p>
<p>3. 시장은 제2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	

현행	개정안
<p>제28조(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)① 영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맞벽건축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(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한한다)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. 다만, 타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8조(맞벽건축 및 연결복도) (삭제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9조(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반대 측에 광장·하천·바다·철도·공공공지·공원(근린공원,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)·유수지·-----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9조(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반대 측에 광장·하천·바다·철도·공공공지·공원·유수지·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0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①(생략)</p> <p>1.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: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</p> <p>2.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: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</p> <p>3.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</p> <p>②~④(생략)</p>	<p>제30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①(현행과 같음) (삭제)</p> <p>2.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: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.5미터 이상</p> <p>3.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</p> <p>②~④(현행과 같음)</p>

[별지 제3호 서식]

속초지역 건축사회 지정 제 - 호
지정일 : 년 월 일 확인자 (서명)

- 임시사용전
 사용승인전

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지정 신청서

1. 건축물 현황

건축물 위치			
건축주		설 계	
건축물 용도		동 수	동
구 조		층 수	지하: 층, 지상: 층
건축허가일자		착공일자	20 년 월 일
건축면적	m ²	연 면 적	m ²
건 폐 율	%	용 적 율	%

위와 같은 내용으로 「건축법」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, 「속초시 건축조례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.

2. 신청인

건축주	주소		전화번호	
	성명		생년월일	

3. 업무대행 지정자

업무지정 건축사	상 호		전화번호	
	성명	(서명 또는 인)	면허번호	제 호

20

속 초 지 역 건 축 사 회 회 장 (인)